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 부서명 | 페이지 |
|----------------------------------|-----|-----|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1 |

(2013. 11. 20)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3년 11월 19일

4.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부칙 제4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정원의 관리)부터 제30조(정원의 규정)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 12. 12.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 개편 가이드 라인 기준에 맞게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약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 중 일부를 일반직과 전문 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 (1)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를 명시함.
- (2) 안 별표1에서는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비율에 포함함.
- (3) 안 별표2에서는 직종개편 후의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함.
- (4) 안 별표3에서는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

| 구 분 | 총 계 | 정무직 | 일반직 | | | | 별정직 | | | | 기능직 | 연구직 |
|-----|-------|-----|-------|-------|-------|----------|-----|-------|----------|------|-----|-----|
| | | | 소 계 | 5급 이상 | 6급 이하 | 전 문 경력 관 | 소 계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 | | |
| 현 행 | 1,274 | 1 | 1,031 | 65 | 966 | <신설> | 15 | 2 | 13 | 227 | - | |
| 개 정 | 1,274 | 1 | 1,267 | 65 | 1,201 | 1 | 5 | 2 | 3 | <삭제> | 1 | |
| 증 감 | - | - | +236 | - | +235 | +1 | △10 | - | △10 | △227 | +1 | |

<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조례 개정 내용 >

- 기능직(227명) => 일반직(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
 1. 일반직(행정직군, 기술직군)으로 전환(143명) : 4개 직렬(방호, 운전, 위생, 조무)
 2. 일반직(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84명) : 4개 직렬(전기, 기계, 농림, 사무)
- 계약직(23명) =>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
- 별정직(15명)
 - => 비서·비서관, 의회전문위원(5명) : 별정직 존치
 - => 전문경력관 전환(1명) : 민방위·화생방 관리원
 - => 일반직 유사직렬 전환(5명) : 체육지도사, 광고물관리원, 영양사
 - => 일반직 구의회 속기직렬 신설 전환(4명)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에 대한 용어를 새로 정의하였으며,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에 따른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12.12.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에도 저촉됨이 없고, 2013.11.7. ~ 2013.11.11.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공포된 이후 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일인 2013.12.12. 이전까지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은 물론 이후 추진일정에 따른 단계별 이행절차를 준수하여 공무원 직종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 제4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 계약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 시험, 비서관·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4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

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급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겹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